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56
----------	---------

제안일자 : 2016. 6. 21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칭 및 구조, 관리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적환장”을 “생활폐기물 보관함”으로 수정하고, “철골조립조”를 “경량철골조”로 하며,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 300이상으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함 (안 제17조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3항 표의 용도 중 “적환장”을 “생활폐기물 보관함”으로 하고, 구조의 “철골조립조”를 “경량철골조”로 하며, 기타의 내용에 다음을 신설한다.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 재시	30제곱미터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품 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 재시	5제곱미터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가설건축물)</p> <p>① ~ ② (생략)</p> <p>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p>	<p>제17조(가설건축물)</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2.5%;">용도</th> <th style="width: 12.5%;">구조</th> <th style="width: 12.5%;">면적</th> <th style="width: 62.5%;">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td> <td>컬러알루미늄재시</td> <td>30제곱미터 이하</td> <td rowspan="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다만,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td> </tr> <tr> <td>제품 야적장</td> <td>철골조립조</td> <td>5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기계보호시설</td> <td>철골조립조</td> <td>3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공연장 매표소</td> <td>목재 또는 알루미늄재시</td> <td>5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차양시설 · 비가리개 시설</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조례 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재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다만,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제품 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재시	5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 비가리개 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조례 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2.5%;">용도</th> <th style="width: 12.5%;">구조</th> <th style="width: 12.5%;">면적</th> <th style="width: 62.5%;">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d>같음</td> <td rowspan="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td> </tr> <tr> <td>제품 야적장</td> <td>(현행과 같음)</td> <td>같음</td> </tr> <tr> <td>기계보호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d>같음</td> </tr> <tr> <td>공연장 매표소</td> <td>(현행과 같음)</td> <td>같음</td> </tr> <tr> <td>생활폐기물 보관함</td> <td>경량철골조</td> <td>1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차양시설 · 비가리개 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d>같음</td> <td>같음</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현행과 같음)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품 야적장	(현행과 같음)	같음	기계보호시설	(현행과 같음)	같음	공연장 매표소	(현행과 같음)	같음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 비가리개 시설	(현행과 같음)	같음	같음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재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다만,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제품 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재시	5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 비가리개 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조례 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현행과 같음)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품 야적장	(현행과 같음)	같음																																															
기계보호시설	(현행과 같음)	같음																																															
공연장 매표소	(현행과 같음)	같음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 비가리개 시설	(현행과 같음)	같음	같음																																														